

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상에 규정된 위탁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방하여 공익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여성회관의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범위를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

□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안건임.
-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범위를 현 조례에서는 여성회관과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법인에 한정하고 있어 대상자 선정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.

〈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〉

제9조(위탁관리)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.

- 수탁기관의 범위기준을 완화하여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 동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됨

〈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〉

제9조(위탁관리)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.